

제 안 설 명 서

【영주아젠다21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영 주 시

영주아젠다21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84
------------	----

제출년월일 : 2003. 12.
제 출 자 : 영 주 시 장

1. 제정이유

우리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체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시민이 환경정책 수립과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구인 영주아젠다21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나.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 부위원장 등의 직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내지 제4조)
- 다.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라. 위원회의 회의소집요건, 의결 정족수 및 의안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내지 제11조)
- 마. 위원회가 대기오염 행위, 수질오염 행위, 폐기물 투기 행위 등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하여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내지 제16조)
- 바.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2 -

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아. 위원회의 사업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참고자료

지방Agenda 21 관계자료(발췌)

영주아젠다21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환경기본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21세 기의 친환경적인 도시를 지향하는 영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민이 환경정책 수립과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에 참여하는 영주아젠다21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요 환경정책 심의 및 정책대안 건의
2. 환경교육·홍보 및 환경보전실천운동
3.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에 대한 각종 환경오염 감시활동
4. 영주아젠다21의 추진에 관한 의견제시 및 자문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이나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4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①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사무국장 1인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6조제2항각호의 순서에 의한 분과위원장인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또한,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선출된 2개 분야의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 4 -

⑤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중에서 임명하고 비상근직으로 하며,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⑥감사는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재정집행에 대한 감사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각 분과위원장과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전심의
2. 기타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6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책분과위원회와 환경분과위원회를 둔다.

②각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책분과위원회 : 주요환경정책 심의, 정책대안 건의 및 국제환경 협력에 관한 사항
2. 환경분과위원회 :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환경오염 원인규명 활동에 관한 사항

③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과 총무 1인을 포함하여 분과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총무는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분과위원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을 하는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운영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시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운영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조(회의 · 의결 정족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안의 제출)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위원은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안의 처리) 위원장은 위원회 · 운영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 처리한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기록을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계획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정책 참여) ①위원회는 시장이 부의하는 주요 환경정책에 대하여 검토 · 전의 한다.

②위원회는 영주시의 환경정책에 대한 정책 대안을 시장에게 전의할 수 있다.

제15조(환경감시활동) 위원회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다음 각호의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1. 무단소각 · 무단배출 등 대기오염 행위
2. 폐수 무단방류, 무단세차 등 수질오염 행위
3.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4. 소음 · 진동 · 악취 등 생활환경 저해 행위
5. 지하수, 토양, 약수터 등 오염 행위
6. 생태계 파괴 및 녹지훼손 행위
7.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영업, 낚시 등 오염 행위

제16조(명예환경감시원증) 시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에 대해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 연구를 의뢰하게 하거나, 공청회 · 세미나 등의 개최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 ·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 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재정지원) 시장은 위원회가 실시하는 사업과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자료

□ 지방Agenda 21 관계자료(발췌)

1. 대두 배경

1972년 6월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 인간환경 회의(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 UNCHE)" 개최 20주년을 기념하고 지구환경을 위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범세계적으로 추구하고자 제44차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 92년 6월 3일부터 14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국가정상급 및 행정수반급을 포함하여 178개국 정부대표 8,000명, 민간단체 6,000명, 언론인 7,000여명이 참석한 금세기 최대의 국제환경회인 유엔 환경개발회의(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UNCED)에서 지구환경보호의 기본원칙인 "리우선언"과 21세기를 향한 세부실천계획인 "Agenda 21"을 확정·채택함으로써 "리우체제"라는 새로운 지구환경질서의 실천토대를 마련한 것과 각국 정상이 직접 참석하여 환경문제를 논의함으로써 환경문제를 지구 최대의 현안으로 부각시킨 큰 성과였다

"리우선언"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각 국가들의 행동원칙을 광범위하게 정한 것이며 "Agenda 21"은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행동지침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Agenda 21"은 "리우선언"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행동 지침을 담은 4부 40장 115절로 구성된 문서로서 150개 프로그램과 2,509개의 구체적 행동을 담고 있다. 특히

- 8 -

"Agenda 21"의 제3부 제28장에서는 "Agenda 21" 지원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 "Agenda 21"성격

"지방Agenda 21"은 21세기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운동이고, 시민과 지방정부가 함께 만드는 새로운 환경보전계획이며, 지구시대의 새로운 형식의 환경보고서라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이는 총체적으로 지구환경의 지속성을 지방적 수준에서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전략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지방Agenda 21"의 작성주체는 지역사회내의 모든 구성원으로 "Agenda 21"에서는 여성, 어린이와 청소년, 민간단체, 기업, 노동자 및 노동조합, 지방자치단체, 과학기술계 등을 9개 주요그룹으로 규정하여 이들의 참여를 중시하고 있다.

"지방Agenda 21"은 단순히 보고서로서의 결과물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구성원들이 그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보전을 위해 약속한 결과들의 모음이다. 현재까지 지역환경문제에 대한 책임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몫이 있으나, 이제는 시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의 공급자와 수요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각 부분의 역할에 대하여 합의를 만들고 합의사항에 대한 준수의무를 약속하게 되는 것이다.

3. 「지방Agenda 21」 작성 권고

"지방Agenda 21(Local Agenda 21)"은 환경보전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위하여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방Agenda 21"의 수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자체가 지역성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모범양식이 있을 수 없으며, 각 지역의 특수성과 능력에 맞도록 수립해야 하며, 지방정부, 기업, 시민이 해야 할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실천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첫째, 지방정부는 1996년까지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Local Agenda 21" 대하여 합의를 도출하여야 한다.

둘째, 국제기구는 1993년까지 지방정부의 협력 증진을 위한 협의과정을 주도해야 한다.

셋째, 시민연합체 및 지방정부협의회 대표는 지방정부사이의 경험과 정보교환을 확대하기 위하여 협력과 조정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모든 지방정부는 의사결정, 계획, 집행과정에 여성과 청소년이 참여하도록 계획분야에 대한 수행과 조정을 실시해야 한다.